

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- 검토 보고 -

□ 개정이유

-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은 공공재로서의 기능과 재정확충을 위한 수익재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함.
- 금번 개정계획은 공유재산의 대부료·사용료 및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할 때의 이자율을 각각 인하 조정하고, 공유재산의 연체율을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하며, 연체료를 부과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.
- 또한 군 청사 등의 규모를 과다하게 설계하여 신축하므로서 지방재정운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지방청사 설계표준면적 산정기준을 적용코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사용·수익 허가시 허가조건 명시
 - 행정재산·보존재산을 사용·수익허가 할 때에는 사용목적, 사용기간, 사용료 등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이외에 허가조건을 명시 (안 제14조)
-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 인하
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·영세농가 등에 적용되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 인하(안 제22조제1항)
이자율 : 5%(현행) ⇒ 4%(개정안)

-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(7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)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등에 적용되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 인하 (안 제22조제2항) 이자율 : 8%(현행) ⇒6%(개정안)
-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 등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 인하 (안 제22조제3항)
- 영리목적에 대하여는 특례적용 배제
 -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·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산출한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 적용하는 특례내용에서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에 대하여는 특례적용 배제 (안 제23조의2 제1항)
- 연체이자율 차등인하 및 연체료 부과기간 상한설정
 - 대부료 및 사용료, 매각대금,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지하는 연체이자율을 차등 인하하고, 연체료 부과기간 상한 설정 (안 제28조제1항)
- 지방청사 설계표준면적 적용
 - 청사·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지방청사·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 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, 행정수요 등 장래 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(안 제47조)

□ 참고사항

- 충청남도 세정 13330-1444(2002. 8.22)호의 『지방청사설계표준면적산정기준』
- 충청남도 세정 13330-2210(2002.12.27)호의 『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』

□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청사 등의 규모를 과다하게 설계함으로서 지방재정 운영에 막대한 부담을 줌으로서 이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
-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 인하 등과 군청사 설계표준면적 산정 기준을 적용하므로 인하여 주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켜 줄 것으로 보아 본 개정조례안은 매우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나
- 이자율 등을 인하함으로써 세입의 감소에 문제가 없는지와 이에 따른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며, 앞으로 군청사를 이전할 경우에는 청사 등의 표준설계면적 기준에 적합토록 적정규모의 설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,
-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8장 관사관리의 제50조 등 몇 개 조항의 일부분은 군수 관사의 매각처분으로 인하여 삭제할 필요성은 없는지도 설명이 필요합니다.
- 끝으로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문제점이 있는 공유재산을 발굴 조사하여 재산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